

2025년도 안경사 국가시험 종합안내서

2025. 8.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목 차

I 시험개요	1
II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2
1.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2
2. 응시원서 접수안내	4
III 출제정보	5
1. 필기시험 - 컴퓨터시험(CBT)	5
2. 예시문항	6
IV 시험시행	8
1. 필기시험 - 컴퓨터시험(CBT)	8
V 합격자발표	13
1. 합격자 결정방법	13
2.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신청	13
VI 면허증 발급	14
VII 기타	18
1. 증명서 발급 안내	18
2. 답안카드 열람 안내	19
3. 응시확인서 안내	19
4. 안경사 국가시험 합격률	20
5. 안경사 국가시험 분석결과	20
VIII 자주하는 질문(FAQ)	21

I 시험개요

□ 2025년도 제38회 안경사 국가시험

※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등 세부사항은 해당회차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38회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	• 인터넷 접수: 2025. 9. 3.(수) 09:00 ~ 9. 10.(수) 18:00	
	응시 수수료	• 110,000원	
	장소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 메뉴 ※ 단,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학교 등 졸업자로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에 방문,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원서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시험장 공고일		• 2025. 11. 5.(수)	※ 시행계획공고 ‘시험장 선택제 운영방안 안내문’ 참고
시험장 선택기간		• 2025. 11. 5.(수) ~ 11. 9.(일)	
응시표 출력기간		• 2025. 11. 12.(수) 이후부터 출력 가능	
시험시행	일시	• 2025. 12. 20.(토)	
	장소	•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정보] - [직종선택] - [시험장소]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합격자 발표	일시	• 2026. 1. 9.(금)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합격자조회] 메뉴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SMS 통보	

Ⅱ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1.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률 부칙(법률 제4912호, 1995. 1. 5.) 제4조 또는 동법률 부칙(법률 제19817호, 2023. 10. 3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규정하며 결격사유는 동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응시자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삭제

3. 삭제

4.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2019.12.12. 시행)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의료기사·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4912호, 1995.1.5.) 제4조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를 제외한다)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9817호, 2023.10.31.) 제2조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결격사유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 (1)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2)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응시원서 접수 안내

- ※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출제정보

1. 필기시험 - 컴퓨터시험(CBT)

□ 시험문제수, 배점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1	1. 시광학이론(85)	08:30	09:00~10:15 (75분)	1점
2	1. 의료관계법규(20) 2. 시광학응용(85)	10:40	10:50~12:20 (90분)	
3	1. 실기시험(60)	12:45	12:55~13:55 (60분)	

□ 필기시험과목 및 문제형식

시험과목	문제수(총점)	문제형식
가. 시광학이론 : 시기해부학(눈해부학), 시기생리학(눈생리학), 안질환, 안경재료학, 안경광학, 기하광학, 물리광학, 나. 시광학응용 : 안경조제/가공 및 이를 위한 굴절검사, 시기능이상, 콘택트렌즈(조제제외), 안광학기기 다.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190문제 (190점)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시험과목 및 문제형식

시험범위	문제수(총점)	문제형식
시광학 실무에 관한 것	60문제(60점)	객관식 5지선다형

□ 안경사 국가시험 출제범위(링크)

2. 예시문항

1. 공기 중에 있는 물체가 +5.00 D의 얇은 렌즈 앞 50 cm에 있을 때, 상의 종류는?

- 1) 축소, 도립, 실상
- 2) 축소, 정립, 허상
- 3) 확대, 정립, 실상
- 4) 확대, 정립, 허상
- 5) 확대, 도립, 실상

2. A학생을 운무상태에서 난시 검사한 결과 방사선시표 1시 방향이 선명하게 보였다면 (-)원주렌즈 축 방향으로 옳은 것은?

- 1) 30°
- 2) 60°
- 3) 90°
- 4) 120°
- 5) 150°

3. 다음 처방서에서 렌즈의 조제가공 P.D. 는?

O.D. : S-2.00D $\oslash$ C-2.00D Ax 90 $\oslash$ 2.0 $\triangle$, B.I., 측정기준 P.D. 30mm

- 1) 20 mm
- 2) 25 mm
- 3) 30 mm
- 4) 35 mm
- 5) 40 mm

4. 운전자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유리창에 반사된 빛에 의한 눈부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경렌즈는?

- 1) 편광렌즈
- 2) 프레넬렌즈
- 3) 렌티큘러렌즈
- 4) 자외선 차단렌즈
- 5) 적외선 투과렌즈

5. A는 정상 시야이다. 시야가 B와 같이 보인다면, 질환이 생긴 것으로 추측되는 조직은?

A.



B.



- 1) 황반
- 2) 홍채
- 3) 섬모체
- 4) 톱니둘레
- 5) 시신경유두

IV 시험시행

1. 필기시험 - 컴퓨터시험(CBT)

□ 시험방법

시험직종	시험방법	응시자 배부물품
안경사	•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 • 기존 종이시험의 문제유형	• 메모용지(A4) 1매, 볼펜 (시험종료 후 회수)

□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 필기시험 시험문제 및 가답안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실 전면의 '시험문제 공개 및 합격자 발표 안내' 부착물을 참고(단, 3교시 실기시험은 비공개)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함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시험일 응시자 입장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 아울러 1교시 시험에 결시한 자는 이후 시험 교시에 응시 불가함
 - 시험이 시작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 불가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 불가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

○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 불가

< 신분증의 범위 >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운전면허증
-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한민국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위의 신분증 중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 포함)도 인정

- 응시표가 없는 경우, 시행본부에서 응시번호만 확인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함

○ 컴퓨터 화면에서 시험시간 및 남은시간이 표시됨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해야함

○ 시험 중 고의로 시험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0점'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 점심시간이 포함된 시험직종의 경우 응시자는 밀폐가 가능한 도시락 및 뚜껑이 있는 음용수를 직접 개별 지참하고, 식사 후 시험장내에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하지 말고 직접 회수하여 퇴실할 것
- 시험실 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시험실 내 취음, 취식은 불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

□ 컴퓨터시험(CBT) 유의사항

-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으로만 응시할 수 있음
- 컴퓨터시험(CBT)은 답안카드를 작성하지 않음(PC를 보고 답안을 마우스로 클릭함)
-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기기(PC)를 사용
- 응시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시험실에서 퇴실할 수 없음
- 컴퓨터시험(CBT) 응시자 안내 동영상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시험정보-컴퓨터시험-CBT’ 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 컴퓨터시험(CBT) 튜토리얼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시험정보-컴퓨터시험-CBT-CBT 체험하기’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단,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데스크톱 PC를 사용하는 실제 시험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동되지 않거나 화면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필기시험 컴퓨터 시험(CBT) 시행 직종) 시행계획(링크)

□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향후 시험응시가 3회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답안카드, 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CBT) 중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를 시험기기에 연결하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 처리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제3조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시험장에서 감독관 또는 다른 응시자 등 타인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주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기타 유의사항은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

V 합격자발표

1. 합격자 결정방법

안경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하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 취소 가능

□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2.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신청

□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6. 1. 9.(금)

□ 합격자 확인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휴대전화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Ⅵ 면허증 발급

□ 면허발급 절차

○ 안경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면허증 발급



□ 면허신청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면허(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직종별 제출서류와 함께 국시원으로 우편 발송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
(단, 방문접수를 하더라도 우편접수 보다 면허 발급이 먼저 처리되지 않음)
- 보내실곳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

□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 국시원 홈페이지 -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확인

□ 면허신청 제출 서류

- 가.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나. 졸업증명서
- 다. 의사진단서
- 라. 성적증명서(2025년 3월 이후 졸업자만 제출)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과거 서식에 직접 작성하거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경우 접수 불가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면허증 수령 방법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선택
- 면허(자격)증 수령주소로 등기우편이 발송되므로 주소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
(잘못된 주소를 입력한 경우(동호수 미기재 등) 면허(자격)증 발송 불가)

※ (주소변경) 수기로 수령 주소를 수정할 경우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여 면허(자격)증 교부신청서 재출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으로 선택 시 ‘방문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수신 후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로 방문하여 수령(신분증 필참)· 우편으로 선택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동호수 미기재 등 잘못된 주소 입력 시 등기우편 발송이 불가)·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되므로 실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대리인 수령 가능) |
|---|

- 신청서 출력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작성 후 출력
- 면허(자격)신청을 위한 사진변경 또는 개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 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에서 해당 증빙 파일 업로드하여 신청

○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 제출 시 증명서 하단에 ‘전자증명서(PDF파일) 출력 시 출력물은 사본으로 인정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접수 불가
-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처리인과 직인 및 수입증지 등 날인이 확인되어야 접수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졸업예정증명서 불인정)

- 대학 및 기관에서 단체 신청할 경우 개인별 제출 서류 일체(면허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의사진단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
- 사본 불인정

○ 성적증명서(2025년 3월 이후 졸업자만 제출)

- 성적증명서 제출 시 증명서 하단에 ‘전자증명서(PDF파일) 출력 시 출력물은 사본으로 인정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접수 불가
-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처리인과 직인 및 수입증지 등 날인이 확인되어야 접수 가능
- 현장실습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형광펜으로 표시
- 졸업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
- 사본 불인정

○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 사전 확인

인정되는 문구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법에서 정한 문구와 다른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는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진단서 문구를 확인

구분	인정(O)	불인정(X)
진단내용	정신질환자	정신병, 정신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농자·아자·맹자
진단결과	~(이)가 아님, 증명(판단)함	사료(추측·소견)됨

- (신청자)성명·생년월일, 진단내용, 진단일(발급일), 의료기관명 및 소재지, (의사)성명(서명 또는 직인)·면허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사본 불인정

□ 결격사유 조회 서류 관련(외국인 합격자에 한함)

-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제출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 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
- 서류 도착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국가	발급처	관련서류명	내용
미국	주한미국대사관	AFFIDAVIT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범죄기록 사실유무
캐나다	주한캐나다대사관		
뉴질랜드	주한뉴질랜드대사관		
대만	주한타이페이대표부	성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중국	해당시 공증처	미수형사처분공증서	
일본	일본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시청	신분증명서	금치산자·파산선고 사실유무

※ 위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

Ⅶ 기타

1. 증명서 발급 안내

국시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증명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 바코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원본 증명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과 구분할 수 있는 복사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수령한 기관은 국시원 홈페이지 원본확인 메뉴에서 원본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

□ 이용안내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는 1999년 하반기 이후 시행한 시험의 응시자에 한해 다음 서비스가 제공됨
 - 성적 열람(과목별 취득 점수 및 평균 점수)
 - 성적증명서·합격확인서 발급
- * 1999년 상반기 이전 시행한 시험의 응시자는 전화(1544-4244)로 문의

□ 수수료 안내

- 성적 열람: 무료
- 성적증명서·합격확인서 발급: 1,000원

□ 신청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증명서 발급 신청]

□ 증명서 발급 안내(링크)

2. 답안카드 열람안내

답안카드 열람(필기시험에 한함)은 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답안카드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인 가능

답안카드 열람을 위한 **방문예약**은 희망일 1일 전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

□ 열람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이 안내한 장소에 **직접 방문**

※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 후 회신을 받은 응시자는 방문 희망일시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이 안내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속하게 답안카드 확인이 가능

※ 열람 중에는 복사, 사진촬영, 메일 전송 등이 불가함

※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문제지를 지참하여야 하며, 국시원에서는 문제지를 제공하지 않음

3. 응시확인서 안내

응시확인서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응시확인서 발급은 2011년 이후 시험부터 가능

□ 응시확인서 발급 절차

○ 합격자 발표 전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발급] > 발급신청 > 담당자 승인(발급 승인) > 본인 인증 후 발급 완료(출력 가능)

※ 시험 종료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발급 신청부터 출력까지 **7일** 이내의 시간 소요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합격자 발표 후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발급] > 발급신청 > 본인 인증 후 발급 완료(출력 가능)

※ 해당 시험의 결시 응시자는 응시확인서 발급이 불가

※ 발급신청과 동시에 완료되어 출력 가능

4. 안경사 국가시험 합격률(링크)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출제자료] - [연도별 국가시험 합격률]

5. 안경사 국가시험 분석결과(링크)

국시원에서는 매년 홈페이지에 직종별 분석 결과를 공지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출제자료] - [국가시험 분석결과]

□ 고객센터(1544-4244) 운영

○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운영시간 이외에는 국시원 [홈페이지]-[고객소통]-[질문하기] 메뉴를 이용

Ⅷ 자주하는 질문(FAQ)

Q1. 시험일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일정은 시험일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매년 7월 중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고되는 시행계획에서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추후공지’로 공지될 수 있습니다.

시험시행계획의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시자격
2. 시험일정
 - 1) 응시원서 접수기간
 - 2) 응시수수료
 - 3) 시험일
 - 4) 합격자발표 예정일
 - 5) 필기시험 지역
 - 6) 시험장 공고일
3. 접수방법
4.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5.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6. 실기시험 범위 및 응시자 준비물
7. 합격자 결정방법
8. 응시자 유의사항
9.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10.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신청

단, 시험 장소는 시행지역만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시험장은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에 별도로 공지됩니다.

Q2. 시험 중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 시험 중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 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분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으면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는 처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개통하지 않아 통신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부정행위 처분 대상 물품이 됩니다.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다기능시계, 카메라펜,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는 시험 중에 소지하면 안됩니다.

전자기기, 통신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온 경우, 시험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한 기기 일체의 전원을 끈 후 가방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제출한 물품은 쉬는 시간에는 사용 가능하나, 새로운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한 기기 일체의 전원을 끈 후 가방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관련 자료나 교재 등을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며, 향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시험 장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시험장소 공고일은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는 시험일 30일 전에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홈페이지 상단의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 정보” 메뉴를 클릭한 후, 해당 직종을 선택하시면 해당 직종의 시험일정, 응시자격 등 시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시험장소”를 클릭하면 시험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응시표 출력 기간에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시험장소를 확인하거나,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 ☞ 응시자는 접수할 때 선택하여 국시원이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시원은 미리 응시자의 인적 사항 정보를 각 시험장에 배포하며, 감독관은 이것으로 응시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응시자의 인적 사항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응시자가 배정된 시험장에만 배포하므로, 응시자의 정보는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장 이외의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Q5.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 ☞ 국시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응시자가 직접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험장 선택제’를 1·2급 응급구조사 및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필기시험 전 직종에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때 응시지역만(예: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선택한 후, 시험장 공고일에 응시지역별 시험장을 확인하여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 내 시험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시험장 선택기간 동안 “시험장소 선택”메뉴에서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장 잔여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며 기간 내 시험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시험장소를 국시원에서 임의로 배정하게 됩니다. 시험장이 1개뿐인 응시지역은 별도로 시험장소를 선택하지 않아도 시험장 선택기간 경과 후 일괄 배정될 예정입니다.

단, 시험장 선택기간 동안에는 시험장만 선택·변경할 수 있으며, 응시지역은 변경할 수 없으니 응시원서 접수 시에 희망하는 응시지역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 원서접수 기간에 방문하여 응시원서 및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경우 시험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응시지역에 배정된 응시번호의 시험장으로 지정됩니다.

Q6. 응시지역과 시험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 필기시험 장소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 지역(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착순으로 변경됩니다.

구분	신청방법(인터넷)
○ 타 지역으로의 변경	• 시험장소 공고 7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	• 응시표 출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은 동일지역 내 시험장이 2개 이상인 지역만 가능하며, 시험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시험장 잔여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7.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나요?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문제는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홈페이지-고객소통-이의신청』에서 시험 종료일로부터 5일 간 시험문제지 및 가답안 확인이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간 최종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시험문제 및 정답의 직종별 공개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여부	시험직종
공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안경사, 1급 응급구조사, 보건교육사 1·2·3급, 1급 언어재활사,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 단, 의사, 치과의사, 안경사,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경우 비공개 ※ 의사, 한의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문제 중 멀티미디어 문제는 비공개
비공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Q8. 시험 중 화장실에 갈 수 있나요?

☞ 필기시험(CBT) 시간 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며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응시자는 시험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고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감독관 안내에 따라 답안 제출 후 소지품은 교실에 둔 채로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시험 종료 이후에 입실 가능합니다.

Q9. 시험 중 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험 중 PC, 이어폰 등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기기의 특성 상 PC가 멈추거나 꺼지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C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거나 즉시 새로운 좌석의 PC로 이동해 드립니다. 이 때, 기존 PC에 저장된 답안정보 등을 모두 새로운 PC에 복원하여, 이전 시험 진행 상태와 동일하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교체에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보장해드리므로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Q10. 컴퓨터시험(CBT)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컴퓨터시험(CBT)을 사전에 연습해 볼 수 있도록 ‘CBT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톱PC를 통해 체험 가능한 ‘CBT 튜토리얼’은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컴퓨터시험 - CBT - CBT 체험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uksiwon.or.kr/CBT/index.html>)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구동되지 않거나 깨질 수 있으니 반드시 PC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BT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은 국시원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옆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웹기반 튜토리얼 메뉴



2025년도 안경사 국가시험 종합 안내서

발행일 2025년 8월

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발행인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1544-4244

www.kuksiwon.or.kr